

●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-094호

「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」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11. 29.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「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「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」에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, 심사에 필요한 신청 서류 요건 완화 및 공익채널 선정 확대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용어 정의 명확화(안 제2조제2호)

- 현행 고시에 있는 용어 중 ‘신청법인’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하기 위해 개정

나. 공익채널 신청 서류 요건 완화(안 제5조제4항제2호)

- 연도별 송출 실적 자료와 공익채널 유효 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해 2년간 송출 실적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하는 부속서류의 경우 제출 부수를 완화(10부→3부)하도록 개정

다. 공익채널 선정 확대방안 마련(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)

- 심사위원회는 공익성 방송분야 별로 3개 이내의 채널을 선정하고, 그 외 선정 기준점수를 초과한 채널을 예비채널로 지정하며,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된 예비채널 중 공익성,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익채널을 추가 선정 결정 할 수 있도록 개정

라. 공익채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(안 제10조제2항)

- 공익채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을 현행에 맞게 개정

3. 의견제출

-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(참조 : 방송지원 정책과, 주소 :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,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전화 : 02) 2110-1434, 이메일 : ssh0530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4. 기 타

-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(02-2110-143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